####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운영지침

제정 2011. 2. 2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-10호 개정 2013. 5. 1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-13호

제1조(목적)「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」(이하 "운영요령"이라 한다.) 제37조(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·운영)에 따라 중소기업산학 연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지원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중소기업 산학연협력지원사업(이하 "사업"이라 한다)"이라 함은 중소기 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말한다.
- 2. "주관기관"이라 함은 사업의 과제를 직접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학·연구기관을 말한다.
- 3. "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"(이하 "센터"라 하며, 주관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"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", 주관기관이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"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"라 한다)라 함은 중소기업청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.
- 4. "산학연협력 매니저"(이하 "매니저"라 한다)라 함은 센터에 소속되어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말한다.

- 5. "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"(이하 "코디네이터"라 한다)라 함은 전문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.
- 6. "관리기관"이란 사업의 관리 및 점검·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- 7. "전문기관"이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,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(사)한국산학연협회를 말한다.
- 제3조(관리사업) 센터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 요령 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제4조(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) ①전문기관의 장은 센터의 운영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평가위원회에 등록할 평가위원의 자격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5조(전문기관의 역할) 전문기관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센터 설치신고서 접수 및 검토
- 2. 센터 운영계획서의 접수 및 검토
- 3. 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
- 4. 센터 운영결과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
- 5.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및 자격시험 실시·관리
- 6. 센터 운영에 대한 연도별 평가

- 7. 기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(센터의 업무범위) 센터는 제3조에 따른 사업과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업무를 관장한다.
- 제7조(센터의 설치)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설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8조(센터 운영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) ①센터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센터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센터 운영계획서에는 예산, 인력 및 과제수행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센터장은 센터 운영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전문기관의 장은 센터장이 제출한 운영계획서가 센터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9조(센터장) ①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- 1. 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의 보고
- 2.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집행
- 3. 센터 운영성과의 활용 및 관리, 보고
- 4. 기술개발사업의 관리 감독
- 5.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특허출원지원 업무
- 6. 산업체 현장 애로기술지도 상담 및 연구개발과제 연계

- 7. 사업수행 결과 발생한 기술료의 관리
- 8. 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
- 9. 기타 센터의 설치·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센터가 설치된 주관기관의 장은 센터장을 임명하여야 하며, 센터장을 임면한 경우에는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센터장은 주관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하되, 센터장의임기는 센터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가급적 2년 이상으로 권장한다.
- ④주관기관의 장은 전임교원·연구원이 센터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수업시수 배정, 연구실적 산정, 업적평가 등에 있어 타 전임교원·연구원보다 우대할수 있다.
- 제10조(매니저) ①주관기관의 장은 센터를 설치한 경우, 센터에 동 사업을 전담하는 매니저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  - ②매니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1. 시행일 현재 센터에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청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
- 2.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소지한 자
- 3. 주관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로 산학연 협력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자 ③매니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중소기업청 소관 기술개발사업의 관리

- 2. 주관기관의 보유기술 발굴·관리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연계
- 3. 산학연 협력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발굴 및 사업 참여 지원
- 4. 주관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
- 5. 기타 산학연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④매니저는 전문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에 참가하여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- ⑤주관기관의 장은 신규로 매니저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.
- ⑥신규로 채용한 매니저가 제5항에서 정한 코디네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간접 비로 인건비 지출은 불가하며, 지출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액 반납 하여야 한다.
- ⑦센터장은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매니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다.
- 제11조(센터 운영비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기술개발사업비의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다.
- 제12조(관련 자료의 제출) 중소기업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센터 및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센터장은 중소기업 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반기별 센터운영보고서
- 2. 제3조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설문조사 등에 관한 사항

- 3. 제3조의 사업의 성공 및 실패 등에 관한 사례 조사·분석
- 4.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
- 제13조(센터 운영결과 제출) 센터장은 센터 운영결과를 매년 6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4조(평가)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결과를 토대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센터의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기 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센터 운영 평가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- 제15조(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) ①당해 연도 사업을 추진 중인 기관은 센터 및 기관의 보유기술과 맞춤형 기술연계서비스를 위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하고, 자료의 보완 또는 수정 내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·수정하여야 한다.
  - ②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자료 및 DB입력현황의 점검·평가를 통해 매니저 또는 기관평가에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
- 제16조(포상 등)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가 우수한 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.
- 1. 기관 및 개인표창 추천
- 2. 센터장 및 매니저 해외연수 지원
- 3. 센터장 및 매니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
- 4. 차년도 산학연협력사업 과제 추가 추천 등

제17조(기타사항) 운영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해석에 따른다.

제18조(존속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의 존속기한은 2016년 5월 12일까지로 한다.

#### 부 칙 <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-10호, 2011.2.22>

제1조(시행일) 이 운영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 <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-13호, 2013.5.13>

제1조(시행일) 이 운영지침은 2013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제10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 자격을 갖추지 않은 매니저를 신규 채용한 경우, 코디네이터 교육을 수료한 매니저에 한 해 2013년 12월말까지는 채용일로부터 12개월까지 간접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4조(평가)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, 그 전까지는 종전의 지 침 제14조(평가)에 따라 처리한다.

#### [별지 제1호 서식]

접수번호

#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설치신고서

#### 1. 주관기관

-1 <del>-1</del>	기 관 명	
기관	대 표 자	전화번호
현황	소 재 지	우( - )

#### 2.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

ગોનો	센 터 명						
센터 현황	별도공간여부					면적(m²)	
7.9	소 재 지	우( -	)				
센터장	성 명					전화번호	
/센터 8	소속학과(부서)					E-mail	@
전담	성 명					근무형태	센터업무만 전담 ( )
인력	코디네이터 자격증	취득 (	),	미취득 (	)	(해당란에 ○표)	센터 이외의 업무도 겸업( )
전담	성 명					근무형태	센터업무만 전담 ( )
인력	코디네이터 자격증	취득 (	),	미취득 (	)	(해당란에 ○표)	센터 이외의 업무도 겸업( )

#### 3. 센터장 및 전담인력에 대한 지원현황

	수업시수 배정	
센터장	연구실적 산정	
센터경	업적 평가	
	기 타	
전담	인센티브 제공	
	•••	
인력	기 타	

「중소기업 산학연협력센터 운영지침」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산학연협력 센터를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20 년 월 일

기 관 명:

대 표 자: (직인)

첨부 : 개인(신용)·정보제공 및 조회·활용 동의서

[첨부]

### 개인(신용)·정보제공 및 조회·활용 동의서

- 1. 기관 또는 개인정보의 확인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한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, 중소기업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정보 조회 기관이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.
- 2. 중소기업청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1호, 제17조제1항제1호, 제23조제1호, 제24조제1항제1호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 (귀기관)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#### 가. 조희할 개인정보

개인정보 필수항목: 개인식별정보 (□동의함 □동의하지 않음) 선택항목: 학력, 경력사항 (□동의함 □동의하지 않음)

나. 조회 목적 :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운영평가 및 사후관리에 한함

다. 조회동의 효력 기간 :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중소기업산 학연협력센터 폐쇄시까지

년 월 일

기관명: (인)

대표자: (인)

(사)한국산학연협회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\*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작성

접수번호	
------	--

# 『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』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운영계획서

20 . .

제출자	기관명				
	작성자	소속 :	직위 :	성명 :	
실적기간		20	~ 20	•	

#### \* 유의사항 :

- 1. 본 **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운영계획서**는 주관기관이 작성하며, 선정된 과제의 사업계획서들을 토 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. 당해년도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세부사업(공동기술개발사업, 기업부설연구소,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등)에 대한 관리 운영계획서로 작성하여 주십시오.

# I 관리개요

1. 기관일반학	변황
----------	----

1-1. 조직

1-2. 기능

1-3. 연구시설 및 인력현황

# 2. 운영계획

2-1. 기본방향

2-2. 사업추진체계

2-3. 참여연구원 현황

2-4. 추진경과(요약)

2-5. 사후관리계획

# 3. 과제 현황

(단위 : 천원)

일련 번호	사업명	과 제 명	참여기업명	사업비	비고
공동		간접비			
1		과제명 1			
2		과제명 2			
3		÷			
:					
:					
:					
:					
:					
:					
:					
:					
	계	00개 과제	00개 업체		

- \* 구분란은 과제의 내용에 따라 지역사업, 전국사업 및 국제사업으로 표기
- \* 전국사업의 경우 해당 연차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상

# Ⅱ 사업비 조성 및 소요내역

# 1. 총사업비

(단위 : 천원)

총사업비			정부 출연금	지자체 지원금	기업부담금		
계	현금	현물	출연금	지원금	현금	현물	소 계

### 2. 과제총괄

(단위 : 천원)

비목	Ä	게 부 항 목	계	과제1	과제2	과제3	과제4	과제5	••••
		○내부인건비							
	인건비	○외부인건비							
		소 계							
	기자재	○기자재 임차료							
	임차 및	○ 재료비							
직접비	재료비	○시작품 제작비							
'   '	연구활동비	<b>ं</b> वे भो							
		○수용비 및 수수료							
		○기술정보활동비							
	○ 연구수당	○ 연구수당							
	0 위탁연구:	개발비							
	소 계								
간접비	ㅇ 간접비								
계	(미지급 ኒ	총 사업비 내부인건비 미포함)							

# 3. 간접비 사용계획

### 1) 인력지원비

(단위 : 천원)

세부항목	내 역	월급여	참여월	금액
	계			

#### 2) 연구지원비

(단위 : 천원)

세부항목	내 역	단가	수량	금액

### 3) 성과활용지원비

#### 3-1. 과학문화활동비

(단위 : 천원)

세부항목	내 역	단가	수량	금액

### 3-2.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선정과제 수	과제개발비 총액	과제개발비의 1%
	계		

### 3-3. <u>기술임치</u> 수수료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선정과제 수	과제개발비 총액	<u>수수료</u>
	계		

[별지 제3호 서식]

접수번호

#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운영결과 보고서

20 . .

제출자	기관명					
세출자 	작성자	소속 :	직위	:	성명 :	
실적기간		<u>20</u>	~ 20			

# I 간접비 사용실적 보고

# 1. 과제 현황

(단위 : 천원)

일련 번호	사업명	과 제 명	참여기업명	사업비	간접비
공동		간접비			
1		과제명1			
2		과제명2			
3		÷			
:					
:					
:					
:					
:					
:					
	계	과제	- 업체		

# 2. 총사업비

(단위 : 천원)

총사업비 정의					기업부담금		
계	현금	현물	출연금	지원금	현금	현물	소 계

# 3. 간접비 사용실적

# 1) 인력지원비

세부항목	내 역	월급여(천원)	참여월	금액(천원)
	계			

# 2) 연구지원비

세부항목	내 역	단가	수량	금액(천원)
	계			

# 3) 성과활용지원비

### 3-1. 과학문화활동비

세부항목	내 역	단가	수량	금액(천원)
	계			

### 3-2.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

사 업 명	선정과제 수	과제개발비 총액(천원)	과제개발비의 1%
	계		

# 3-3. <u>기술임치</u> 수수료

사 업 명	선정과제 수	과제개발비 총액(천원)	수수료
_			
	계		

# 4) 예산대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예산세부항목	예산액(A)	집행액(B)	차액(A-B)	집행률
합 계				

# Ⅱ 세터 운영실적 보고

#### 1. 운영개요

(운영현황, 중점추진사항, 운영성과 등)

#### 2. 운영실적

- 가. 센터 설치 및 별도사무실 확보 여부
  - 센터설치신고서 및 사무실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
- 나.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장 역량
  - 근속연수 : 경력증명서(전임센터장 포함) 첨부
  - 센터장 수업시수 증빙자료
- 다. 센터내 산학연협력 매니저 역량
- 매니저 임명장(또는 채용증빙서류), 경력증명서, 코디네이터 자격증 사본 첨부

#### 라. 센터의 독립성(담당업무)

(해당란에 ○ 기재)

사 업 명	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에서 사업수행	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외 다른조직에서 사업수행
(예)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		

- 마.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실적
  - 완료대상과제의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건수
  - 증빙서류 첨부

#### 바. 가·감점

- 중기청 및 협회 주최 행사 참석 여부(참석한 행사명 일자, 참석자 성명 등 기재)
- 전국·지역(연구기관)협회장 업무 수행 여부(공문 첨부)

- 전년도 산학연협력사업 정산 결과 부적정집행 금액 여부
- 최근 1년간 외부기관(검찰, 감사원, 경찰 등)의 지적사항 여부
- 과제책임자가 연구비 유용건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 여부

### <u>3.</u> 기타사항

#### [별지 제4호서식]

#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운영평가표

평가일 : 20 . . .

기 관 명	센터장	

구분	평가항목	배점 평 가 지 표				평점					
인프라 구축 (20%)	1. 센터설치 및 별도 사무공 간 확보 여부	20	10 센터는 설치했으나 별도 사무실 미확보		·실	20 센터의 별도 사무실 확보 - 칸막이 등으로 타 조직과 구분이 된 경우 포함					
2. 중소기업	산학연협력	15	- 센터장 근속인 3 근속연수 2년 미만	변수(전임 센터 <sup>2</sup> 6 근속연수 2년 이상 ~ 3년 미만		9 근속연수	근	근속연수) 12 속연수  상 ~ 5년 미만	15 근속연수 5년이상		
	센터장 역량	5	- 센터장 수업시수(대학의 참여의지) 1 3		'	5 안/주 미만					
추진 역량 (50%)	3. 센터내 산학연협력 매니저 역량	5	- 코디네이터 지 1 매니저가 없고 직원이 센터업	. 타부서		3 배니저가 있으나 l이터 자격증 미	소지		5 저가 있으며 터 자격증 소지	-	
		15	- 매니저 근속인 3 근속연수 2년 미만	6		터 근속연수 + 9 근속연수 3년 이상 ~ 4년 미만	Ī	12	15		
	4. 센터의 독립 성		- 센터의 담당업무 3			6 터이외의 타 조직에서 1개 사업을 수행		10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			
사업 추진	5. 산학연협력사 업 과제수행 실적	10	- 산학연협력사 2 1~2개	업 과제수 (계= 4 3~5개	속과	-제 포함) 6 6~8개		8 9~117भ	10 12개 이상		
무선 실적 (30%)	6. 지식재산권 출원/등록 실적	20	- 완료과제의 출원·등록건수의 0 5 완료과제당 완료과제당 명균출원·등록 평균출원·등록 0.2건 미만 0.2~0.5건 미만		록	체 평균 10 완료과제당 평균출원·등록 0.5~0.8건 미민	15 완료과제당 - 평균출원·등록 한 0.8~1.2건 미만		20 완료과제당 평균출원·등록 1.2 건 이상		
소	소 계 (A)					점 × 0.3 = _		점			

가·감점	가점 (최대 5점)	<u>5</u>	<ul> <li>중기청 및 협회 주최 행사(워크샵, 코디네이터 교육, 기술혁신대전, 설명회 등) 참여실적</li> <li>기술혁신대전 : 2점</li> <li>기압 행사·교육 : 참여회수/2 절</li> </ul>
		2	- 현재 전국·지역(연구기관)협회장 업무 수행 : 2점 - 최근 3년 이내 전국·지역(연구기관)협회장 업무 수행 : 1점
	감점 (최대 20점)	20	○ 전년도 산학연협력사업 정산 결과 부적정집행 금액 - 1,000만원 이상 : <u>5점</u> - 500만원 이상 1,000만원 미만 : <u>3점</u> - 100만원 이상 5,000만원 미만 : <u>2점</u> - 100만원 미안 : 1점 이 평가일 기준 <u>최근 2년</u> 간 외부기관(건광, 감사원, 경찰 등)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: <u>5점</u> ○ <u>설적기간 내에</u> 과제책임자가 연구비 유용건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 혹은 전문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: <u>10점</u>
소계(가점+감점) (B)			
총점 {(A)+(B)}			
평가의견			

평가위원 소속: 성명: (서명)

- 22 -